

「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」 입안계획서

1. 제명

- 「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」 (관세청 훈령 제2104호, 2021.5.10.)

2. 개정사유

- 특수관계 사전심사 사전상담 및 심사 신청 절차 변경
- 특수관계 사전심사 세관 및 심사 배부기준 변경

3. 주요 개정내용

□ 특수관계 사전심사 사전상담 및 심사 신청 절차 변경

- 특수관계 사전심사 사전상담 신청서 서식을 신설하고 사전상담 접수·배부 주체를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 일원화
-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서 접수를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 일원화하고, 본부세관장은 배부받은 사전심사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

□ 특수관계 사전심사 세관 및 심사 배부기준 변경

- 특수관계 사전심사 세관을 인천세관, 서울세관, 부산세관으로 집중
- 심사 배부기준을 신청인 본사 소재지 관할 세관을 원칙으로 하되, 예외적으로 세관별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주통관지 관할 세관으로 기준 변경

4. 입안내용이 반영된 전문 및 신규조문대비표 : “붙임”

5. 시행일자 : 2023. 00. 00.

6. 의견제출 방법

- 제출처 : 관세청 심사정책과
- 담당자 : 박수경 사무관(042-481-7628), 손동희 주무관(042-481-7767)
- 제출기한 : 2023. 00. 00.
- 제출방법
 - 전자메일 : skskpark@korea.kr, legendhee@korea.kr
 - 우편 :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심사정책과
 - 팩스 : 042-481-7869
 - 내부메일 : 손동희